

2021 청년실험실 활동가 필요기술 : 법령읽기

엄창환
(오동)

생각보다 가까이 있는 우리사회의 약속에 대한 이야기

엄창환
(오동)

오동입니다

부산청년센터 센터장
(전)부산시 청년정책고문
(전)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대표
(전)심오한연구소 공동대표

영도, 부산, 서울, 전국

청년활동

청년이 겪는 사회문제 해결

청년을 사회의 주체로

다음사회 패러다임 전환



P 010-3579-9527

M kid00761@gmail.com

f kid0076

o eomodong

심오한연구소

커뮤니티하우스 심오한집, 관계실험

지역 가까운 곳에서부터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거나
삶을 탐색할 수 있도록
지역과의 연결고리를 만들고
청년커뮤니티 형성을 위해
청년/지역/공간 3가지 주제로 활동

M simbaodong@gmail.com

f simohouse.net

ig simohouse_kr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정책 개선, 지역교류, 교육, 연구

삶의 이행단계에 있는
청년이 겪는 각종 사회문제를
지역 청년들의 협력과 제도개선을 통해
해결하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자발적인 시민 네트워크

M youthpolicynet@gmail.com

f youthpolicynet

H youthpolicy.kr



부산청년센터

청년활동지원, 청년의제발굴
거버넌스 지원

청년과 함께
지금 여기에서
청년을 바라보는,
항상 곁을 내어줄 수 있는
부산청년센터

M odong@bycenter.kr

f bycenter

H bycenter.kr



1. 우리사회의 약속들

2. 청년기본법 이야기

3. 과거약속이 적용되지않는 세상

4. 약속문 읽어보기

우리사회의 약속들

지인과의 약속에서부터

공동체를 위한 약속

보험, 홈페이지 가입 약관까지,

그것을 넘어선

더 큰 약속들에 대한 이야기

우리사회의 약속들



(출처. 아이챌린지호비)

우리사회의 약속들



공동체 약속문

🏠 > 소개

::평등·존중·환대의 공동체를 위한 청년유니온 약속문::

1. 취지문

청

년유니온은 규약을 통해 조합의 성격을 ‘수평적 관계를 지향하는 커뮤니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합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종, 종교, 성별, 연령, 신체적 조건, 고용형태, 정당 또는 신분에 의하여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통해 차별금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약속문은 규약에 명시된 내용을 일상에서 실천하고 평등, 존중, 환대의 조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를 위해 지나온 수차례의 사전 자문과

치열했던 TF 회의, 조합원 토론 등의 과정은 약속문이 가지는 무게를 실감하게 만듭니다.

청년유니온은 자신을 숨기거나 부정하지 않아도, 포기하거나 잃지 않아도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을 지향합니다. 약속문은 청년유니온의 지향을 가리키는 이정표입니다. 약속문의 핵심 가치로는 민주적 토론을 비롯한 고른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는 ‘평등’, 비하 발언이나 일방적인 평가를 지양하고 노동을 포함한 각자의 경험과 정체성을 있는 그대로 대하는 ‘존중’, 권위주의적 위계질서를 부정하고 개방적인 태도를 견지하는 ‘환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세 가지 가치를 토대로 세워진 열 개의 약속은 서로에 대한 믿음과 신뢰, 배려가 있어야만 비로소 제 역할을 해낼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완벽하지 않기에 우리는 더러 실수를 범하기도 합니다. (떠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토론은 조직 내 민주주의를 유지시키는 훌륭한 거름입니다.) 무작정 실수를 두려워하며 침묵하기보다, 함께 고민하고 살피기를 주저하지 않는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약속문을 통해 모든 구성원이 각각 하나의 청년유니온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구직자인 청년유니온, 비정규직인 청년유니온, 성소수자인 청년유니온, 장애인인 청년유니온, 청소년인 청년유니온이 존재하고 있음을 매순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출처. 청년유니온)

우리사회의 약속들

온라인	마이 홈플러스
-----	---------

제 1 조 (목 적)

본 약관은 홈플러스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운영하는 인터넷쇼핑몰 사이트 (이하 "사이트"라 합니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고 한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모바일 기기 등을 이용한 전자거래에 대해서도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이 약관을 준용합니다.

제 2 조 (정의)

- [사이트]란 회사가 온라인쇼핑 관련 재화 또는 용역 (이하 "재화" 등 이라고 합니다.)을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 또는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업자의 의미로도 사용합니다.
- [이용자]란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 등록을 한 자로서 [사이트]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으며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 [비회원]이라 함은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고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본 조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관계 법령 및 해당 서비스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 3 조 (약관 등의 명시와 설명 및 개정 관련)

- [사이트]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영업소 소재지 주소 (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 포함),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 등록번호, 통신판매업신고번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사이트 초기화면에 게시합니다. 다만, 약관의 내용은 이용자가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 [사이트]는 이용자가 약관에 동의하기에 앞서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내용 중 청약철회, 배송책임, 환불조건 등과 같은 중요한 내용을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별도의 연결화면 또는 팝업화면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의 확인을 구할 수 있습니다.
- [사이트]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 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 [사이트]가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사이트]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 [사이트]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 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개정약관의 공지기간 내에 [사이트]에 송신하여 [사이트]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 [사이트]가 본조에 따라 개정약관을 공지 또는 통지하면서 회원에게 30일 기간 내에 의사 표시를 하지 않으면 의사표시를 표명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공지 또는 통지하였음에도 회원이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회원은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회원이 개정약관의 적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개정 약관의 내용을 적용할 수 없으며, 이 경우 회원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약관을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지침 및 관계 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 4 조 (서비스의 종류)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화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구매 계약의 체결
- 구매 계약이 체결된 재화의 배송 또는 용역의 이행
- 결제대금 보호서비스, 이용자 문의 서비스, 상품 구매평 등 기타 정보 제공 서비스 등
- 회사가 직접 또는 제휴사와 공동으로 제공하는 이벤트 서비스 등
- 기타 회사가 온라인쇼핑과 관련하여 정하는 업무

제 5 조 (서비스의 변경)

- [회사]는 재화의 품질 또는 기술적 사양의 변경 및 불가피한 여건 및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공할 재화 등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변경된 재화 등의 내용 및 제공 일자를 공지 또는 게시하여야 합니다.
-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계약을 체결한 서비스의 내용을 재화의 품질 또는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 가능한 주소로 즉시 통지합니다.
- 전항의 경우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회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 6 조 (서비스의 중단)

-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 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제 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 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 배상합니다. 단 [회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사업종목의 전환, 사업의 포기, 업체간의 통합 등의 이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별도로 제시한 보상규정 및 기준에 따라 이용자에게 보상합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기준 등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용자들의 마일리지 또

(출처. 마트 인터넷쇼핑몰)

[illegible][illegible][illegible][illegible]

(출처: 보험사 상해보험 약관)

복잡한 것을 정하는 약속은

내용도 복잡하다.

하지만 자세히 보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알고 있다. 왜?

법적으로 보호를 받기 때문에

우리사회의 약속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융 소비자 보호법)

제4장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영업행위 준수사항

제1절 영업행위 일반원칙

제13조(영업행위 준수사항 해석의 기준) 누구든지 이 장의 영업행위 준수사항에 관한 규정을 해석·적용하려는 경우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금융상품 또는 계약관계의 특성 등에 따라 금융상품 유형별 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업종별로 형평에 맞게 해석·적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시행일:2021. 9. 25.] 제13조 중 금융상품자문업자 관련 부분

제14조(신의성실의무 등)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금융상품 또는 금융상품자문에 관한 계약의 체결, 권리의 행사 및 의무의 이행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②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금융상품판매업등을 영위할 때 업무의 내용과 절차를 공정히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해치면서 자기가 이익을 얻거나 제3자가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시행일:2021. 9. 25.] 제14조 중 금융상품자문업자 관련 부분

제19조(설명 의무)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금융상품자문업자가 자문에 응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및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일반금융소비자가 특정 사항에 대한 설명만을 원하는 경우 해당 사항으로 한정한다)을 일반금융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우리사회의 약속들 : 법령

법령

법령의 종류

🏠 > 온라인 법제교육 > 재밌는 법상식 > 법령의 종류



법제처가 하는 일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선 법령이란 무엇이며, 현재 대한민국은 어떠한 체계를 가지고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법령은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를 정하고 국가기관을 구성하는 근거가 되며, 행정관청이 국민을 위해 일하도록 만들며, 권리구제를 위한 재판의 근거가 됩니다. 또한 그 기능과 효력에 있어 일정한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보통 법이라고 하면 국회에서 만드는 법률을 가리키지만 국민의 일상생활에 법률 못지 않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규범에는 헌법, 조약, 행정부에서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 만드는 대통령령·총리령·부령,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조례·규칙 등이 있어요. 넓은 의미에서 '법'이란 이 모두를 포함하며, 보통 '법령'이라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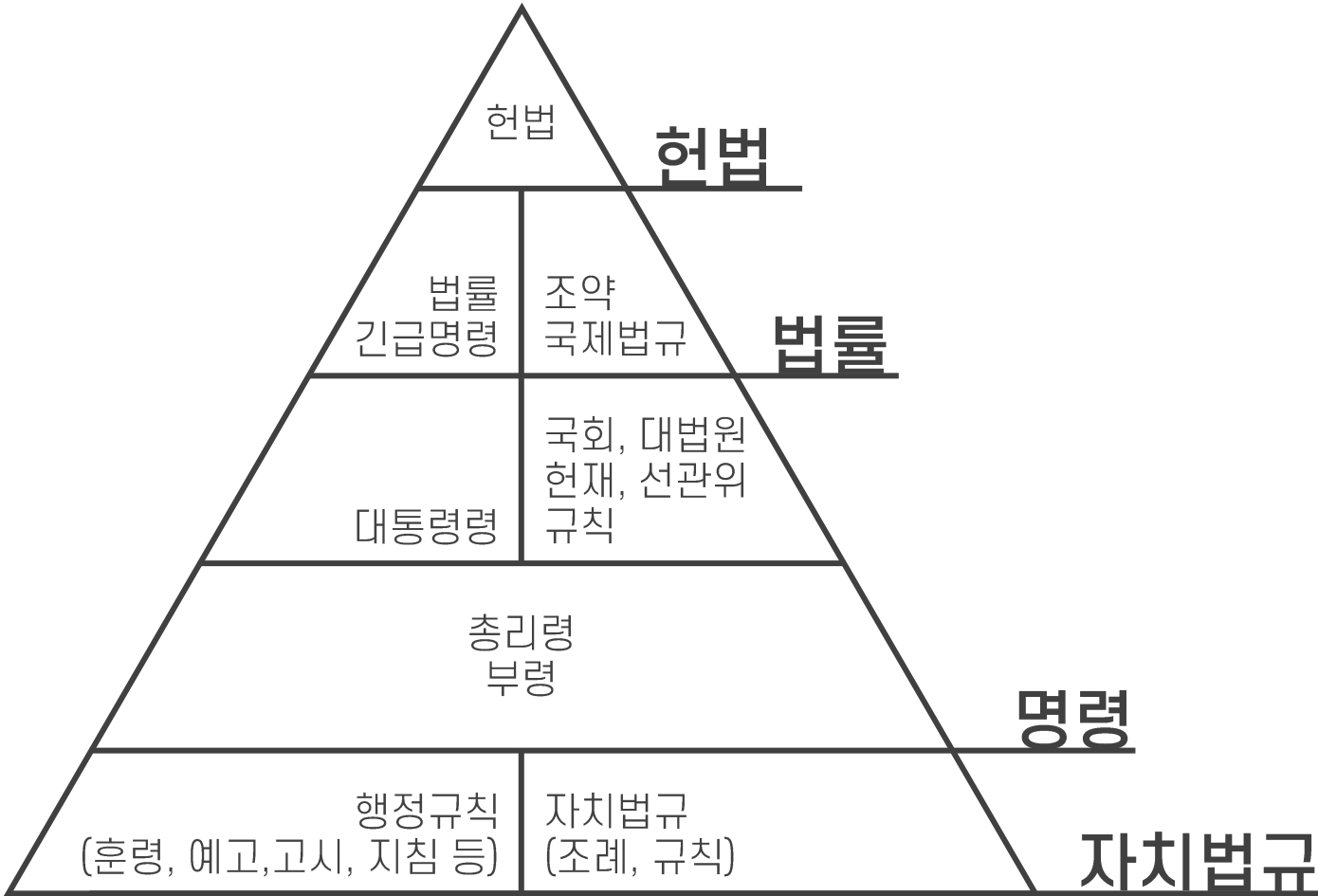
(출처. 어린이 법제처)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것 / 국가기관을 구성하는 근거
행정관청이 국민을 위해 일하도록 하는 것 / 권리구제를 위한 재판의 근거

우리사회의 약속들 : 법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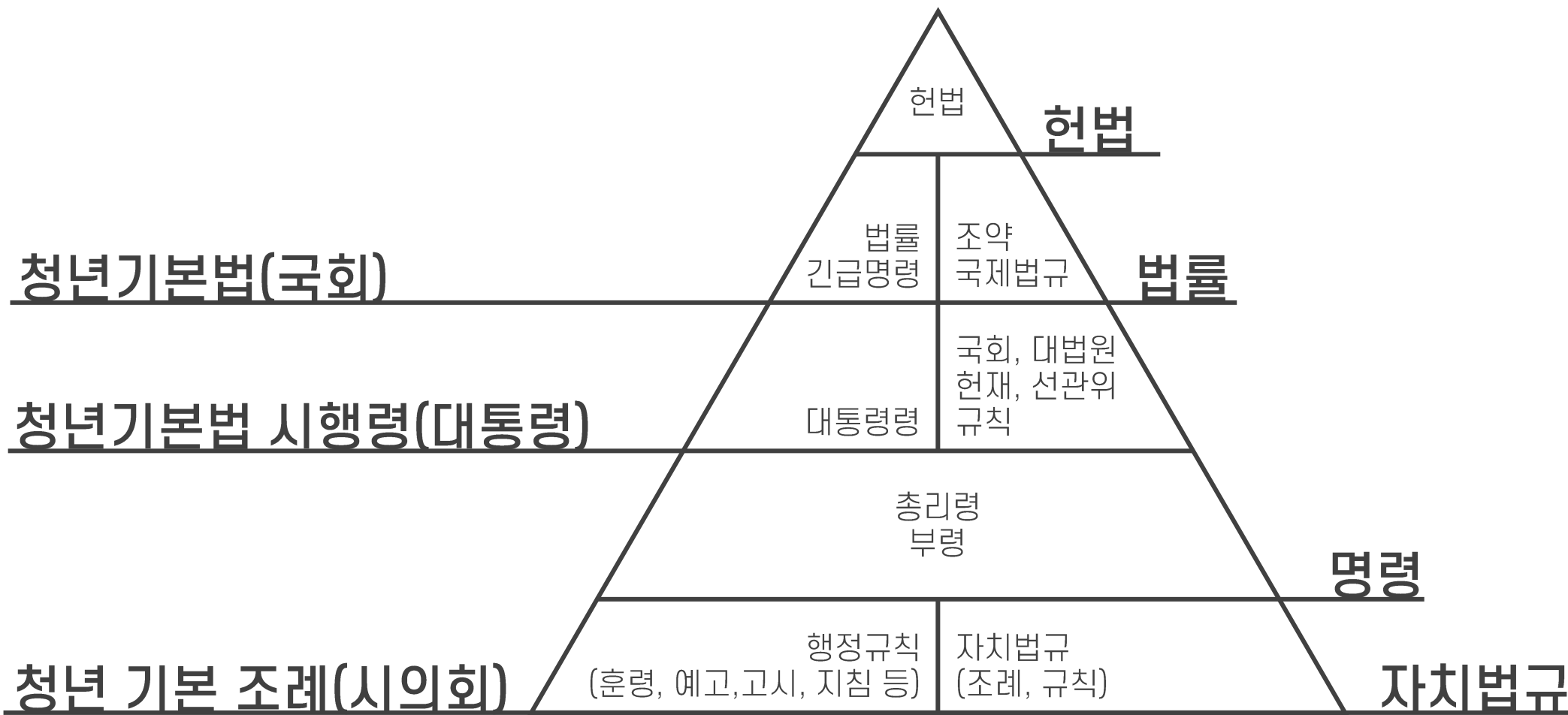
법령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일상 생활 대부분의 것을 규정하고 있는 근거.
생각보다 가까이 있는 우리사회의 약속
말 그대로 생각보다 모든 것이 적혀 있는 약속문



우리사회의 약속들 : 법령

청년정책으로 살펴본 법령



우리사회의 약속들 : 법령

일상에서 만나게 되는 법령들

부가가치세법 제30조 :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퍼센트로 한다.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 : 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조 : 청소년의 우대

도로교통법 제15조 : 전용차로의 설치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2조 : 청년의 날은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로 한다.

광주시 청년정책 기본 조례 제2조 : 청년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

굳이 보지 않아도 괜찮은 법령

but

법령이 오래되어서

현실에 맞지 않아서

문제가 된다면??

청년기본법 이야기

활동은

변화를 만들기 위한 시도입니다.

만약 눈 앞에 보이는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면,

더 큰 변화가 필요하다면

그 과정에 우리사회의 약속문을 꼭 살펴야 합니다.

청년기본법 이야기

무엇이 문제일까?

돌도 씹어 먹을 나이, 산업화의 역군, 지역사회의 노동력까지.

왜 이전부터 현재까지 청년은 노동력으로만 해석되어 왔을까?

왜 청년들을 위한다면서 교육기관, 기업을 지원해왔을까?

우리사회에서 청년을 어떻게 생각하는 것일까?

왜 청년들의 삶은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는 것일까?

지난 15년 간 왜 청년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것일까?

청년기본법 이야기

문제의 원인을 확인하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약칭: 청년고용법)

[시행 2018. 12. 31.] [법률 제16195호, 2018. 12. 31., 일부개정]

고용노동부(청년고용기획과), 044-202-7458

제1장 총칙 <개정 2009. 10. 9.>

제1조(목적) 이 법은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국내외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의 지원을 통하여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10. 9.]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소기업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9. 9. 10.] [대통령령 제30074호, 2019. 9. 10.,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2조(청년의 나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청년기본법 이야기

약속문을 수정하기 위한 약 3년간의 연대

[illegible]

2020년 8월 5일 시행

청년기본법 이야기

청년기본법이 만들어지자 바로 바뀐다 : 변화된 정부의 메시지

1 청년정책 평가 및 시사점

1. (평가) 청년정책 본격제도 진입, 일자리 위주 전개

- (청년정책 현황) '20년 179개 과제 16.9조원(청년예산 추정비율로 산정)
→ '21년 270개 과제 22조여원(전년대비 +30%)으로 확대

- (평가)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중심 청년정책에서 탈피, 포용적
사회정책으로 확장했으나 일부 한계

(출처: 청년정책 기본계획)

√(성과) ❶ 생애주기 차원 '삶의 전 영역' 정책이 아닌 종합정책으로 인식 ❸ 청년기

√(한계) ❶ 기준중위소득 기준 취약계층 한시
부처 위주 추진 ❸ 코로나19 등 대처를 위

2 (시사점) 청년특성 · 환경변화 고려한 청년정책으로 전환

- (청년특성) △현실 대처 + 미래 대비 '이행기' △연령 구간별 정책
수요 차이* △다양한 분야 관심 + 직접 참여 등 인식 변화 종합 고려

* △19~24세 : 교육(학자금) △25~29세 : 취업양질의 일자리 △30~34세 : 결혼독립(주거자산) 등

- (정책환경 변화) 새로운 고용형태(비정형·비임금 노동) 증가, 포스트
코로나19·4차산업혁명·기후변화 등에 선제적 대응*

* 공정 경쟁·보상체계, 보편적 사회안전망, 생애역량개발 체제, 안전한 일터 구축 등

- ⇒ ① 청년기본법의 확고한 실천 기반 마련
② 청년의 다양한 수요·요구에 적극 부응
③ 청년 전체를 포괄하는 정책으로 대전환 필요

청년기본법 이야기

법률 제정으로 청년들이 바뀔 놓은 것

구분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청년기본법
청년	취업을 원하는 00세 ~ 00세	00세 ~ 00세
청년문제	고용문제, 실업문제	이행기 청년 사회진입 지체, 격차 확대
목적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에 기여	청년의 권리와 책임, 정부의 책무 강화
주요내용	구직자, 취업, 재직, 창업, 해외진출 청년, 기업 지원	청년의 일할 권리 보장 청년의 주거부담 줄이기 청년이 스스로의 삶을 그릴 교육 청년의 생활이 나아지는 복지, 문화 청년이 직접 결정하도록 하는 참여, 권리

수단에서 주체로
간접지원에서 직접지원의 방향으로
의존성 강화에서 주도성 강화로
우리사회의 약속문(법령)의 변화는 사회 전체 기조 전환으로 연결

빠르게 변하는 사회에서
삶과 동떨어진 약속문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닐까?

과거 약속이 적용되지 않는 세상

빠르게 변하는 사회

예측이 불가능한 사회

달라지는 감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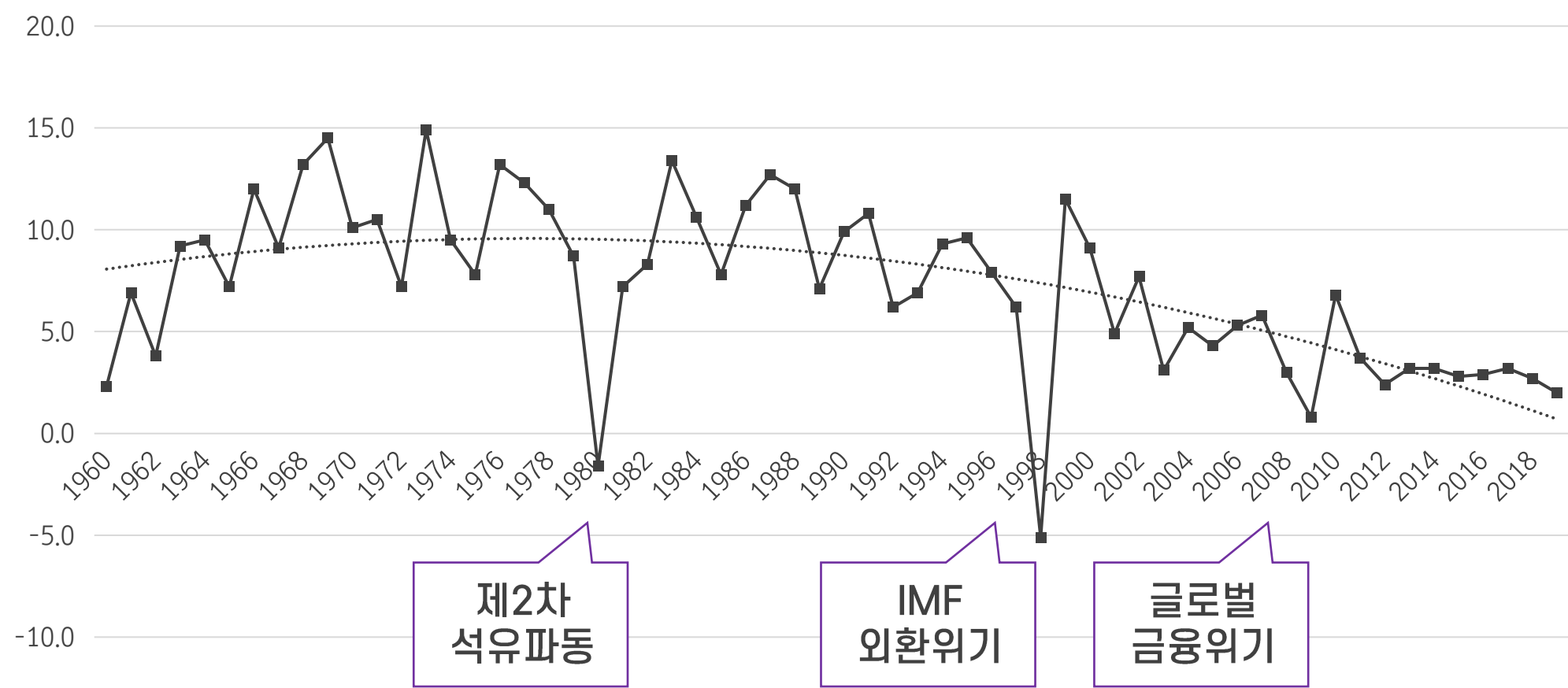
모순에 빠진 과거의 논리

과거의 약속이 적용되지 않는 세상

빠르게 변화는 사회 : 과거의 경험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

[경제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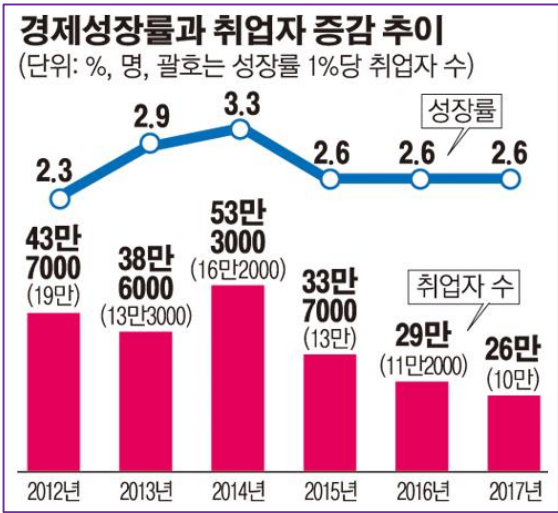
(%, 통계청)



시가총액 상위 기업의 직원수 현황
단위:달러, ()안은 직원 수, 명, 지난해 말 기준

애플	6322억(11만5000)
알파벳	5484억(6만1800)
마이크로소프트	4445억(11만8000)
아마존닷컴	3954억(11만)
페이스북	3705억(1만2600)
⋮	
삼성전자	1916억(32만5000)
오라클	1562억(13만6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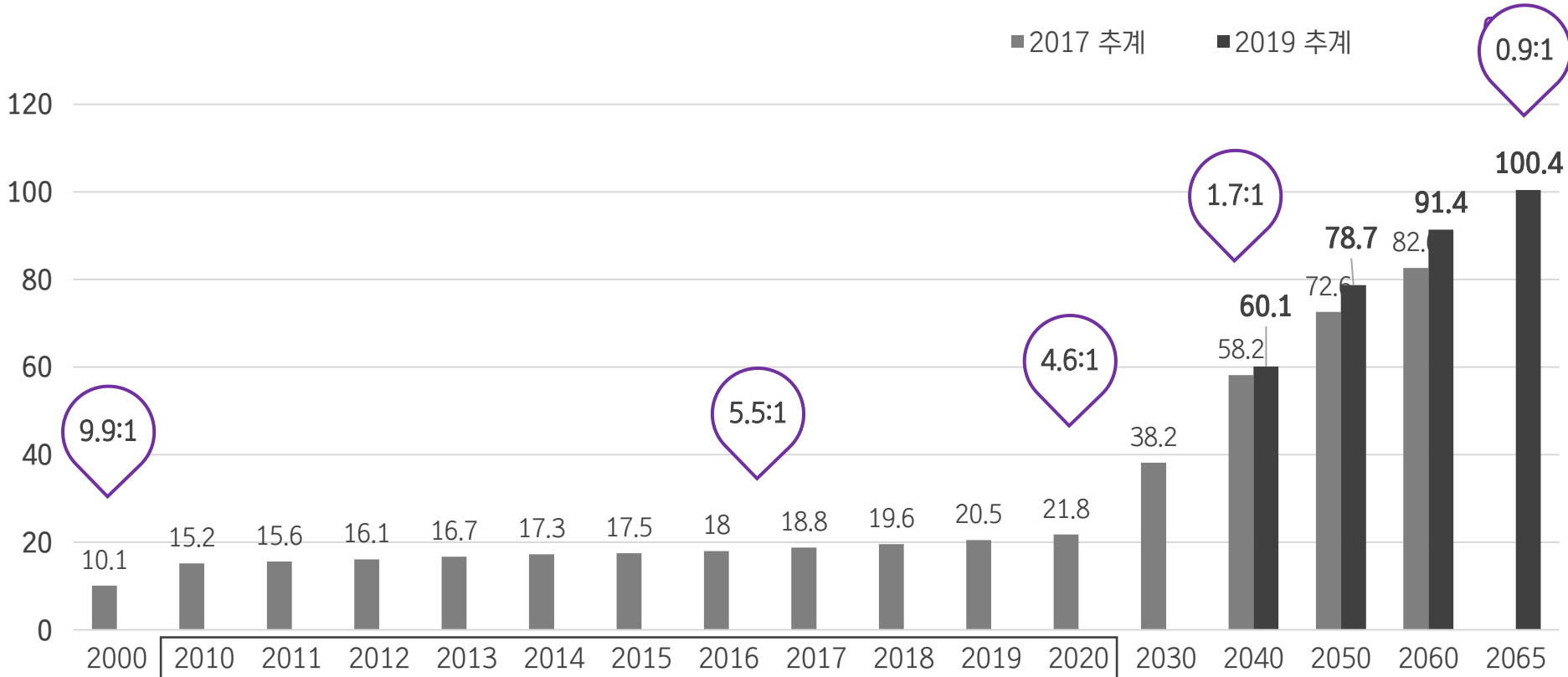
자료: 각 사·블룸버그



과거의 약속이 적용되지 않는 세상

예측 불가능한 사회 : 경로 의존성이 문제가 되는 상황

[노년부양비] (명, 장래인구추계,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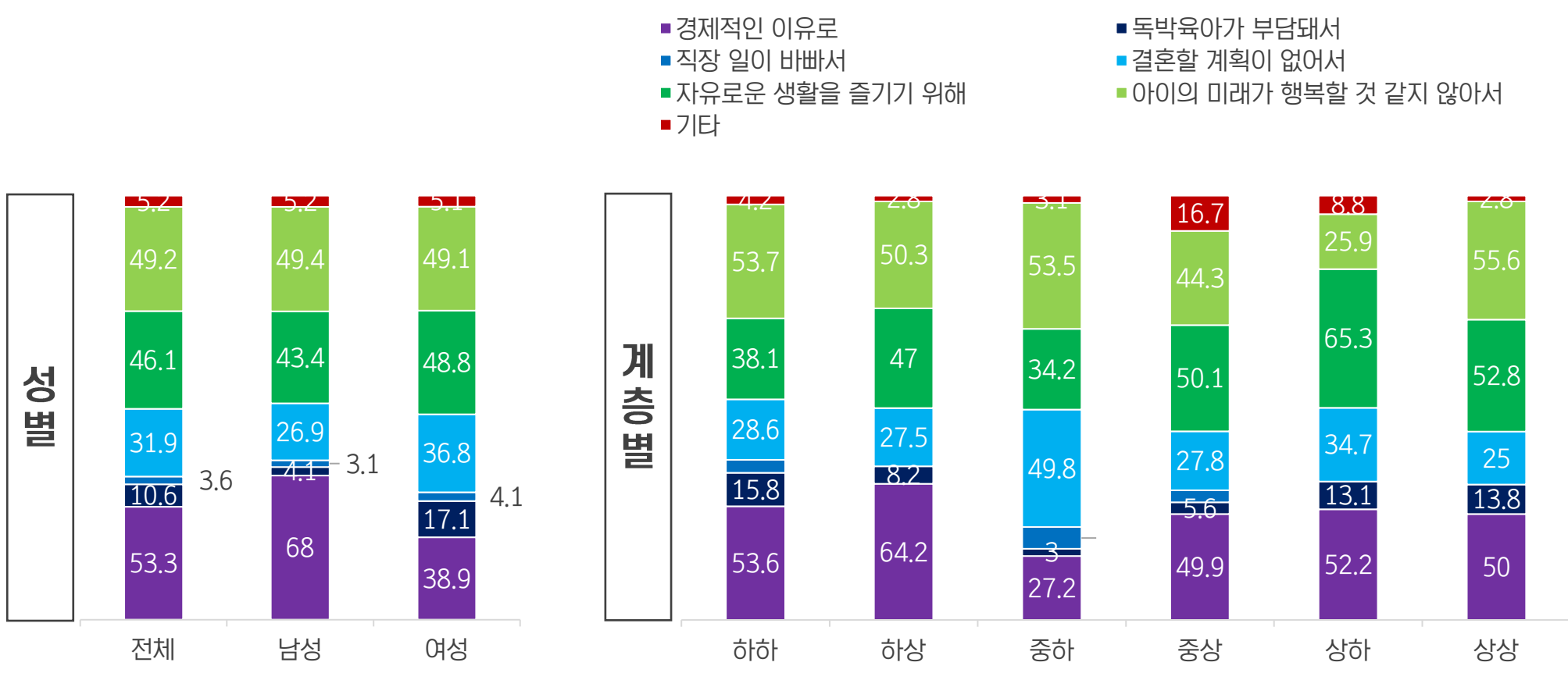


구분	1940~50년대	1960~80년대	1990~2000년대
특징	인구증가	인구억제	인구복지, 출산장려
내용	인구유입, 출산증가	가족계획, 이민, 인구분산	출산장려, 고령화, 삶의질
주요표어	3남 2녀로 5명은 낳아야죠	덮어놓고 낳다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 딸 아들 구별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자녀에게 가장 큰 선물은 동생입니다. 낳을수록 희망가득 기를수록 행복가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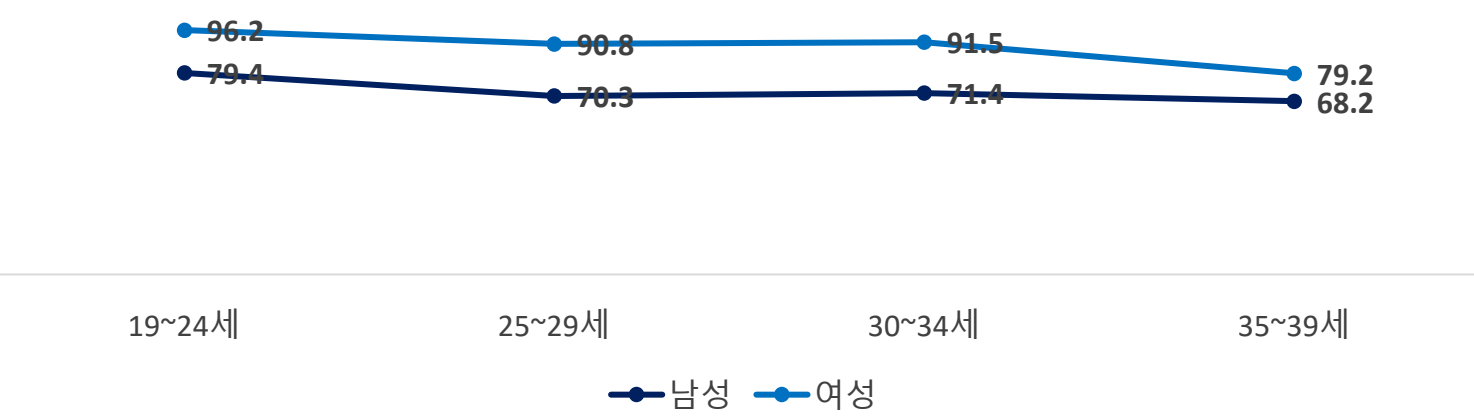
과거의 약속이 적용되지 않는 세상

달라지는 감각 : 가치관의 변화, 다른 약속이 필요한 시기

(%, 새로운 세대의 의식과 태도 조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결혼 후 반드시
아이를 가질
필요가 없다.]



과거의 약속이 적용되지 않는 세상

모순에 빠진 과거의 논리 : 우리 사회의 새로운 규칙이 필요한 시기

[사람은 서울로, 말은 제주로]



[서울로 가는 것이 문제라는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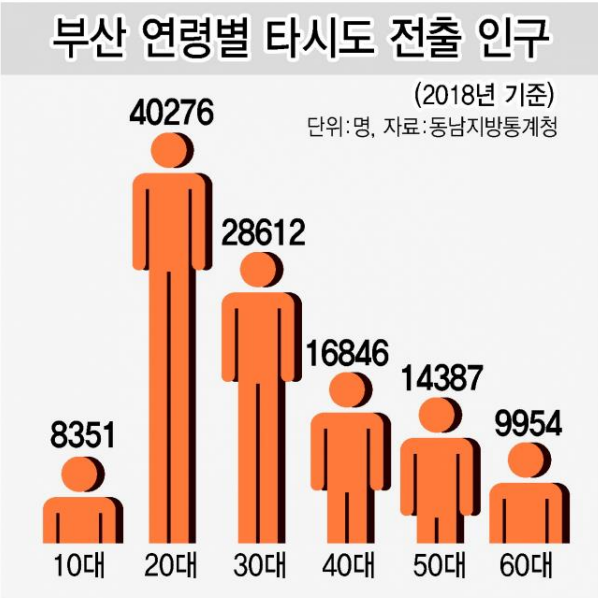
떠나는 것이 문제인가

떠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가

인구 유출 최악도시 부산, 제2도시 입지도 '휘청'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입력: 2019-06-24 19:30:21 수정: 2019-06-24 19:36:32 게재: 2019-06-24 19:31:56 (8면)



사회가 빠르게 변할수록

우리사회의 약속이

현실에 적용되지 않을수록

약속 자체를 바꿔 나가는

시도가 중요합니다.

약속문 읽어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약속문 읽어보기 :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대한민국 모든 법령 검색이 가능한 곳

로그인 회원가입 English 생활법령 - 100% +







법령 자치법규 행정규칙 판례 · 해석례등 별표 · 서식 학칙 · 규정 그밖의 정보 전체메뉴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현행법령 ▼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 ▼ 검색

기관별 찾기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



중앙부처기관 ▼

자치단체 ▼

법분야별 찾기
총 44개 법령 분야



분야별 ▼

최신법령 자치법규 행정규칙 판례 입법예고 +

· 공증 서류의 보존에 관한 규칙 법무부령 2021.2.1.

·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국방부령 2021.2.1.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2021.2.1.

· 상법 시행령 대통령령 2021.2.1.

이번주 시행법령 2021.2.2 +

31 일 1 월 2 화 3 수 4 목 5 금 6 토

< 법률 0 · 대통령령 0 · 부령 0 >

주제별 생활법령 정보

 사업

 창업

 무역/출입국

 소비자

 문화/여가생활

 민형사/소송

 교통/운전

실시간검색순위 내가찾은법령

9 개인정보 보호법 ↓

10 건설기술 진흥법 —

1 건축법 —

2 건축법 시행령 —

3 산업안전보건법 —

세계 각국의 법령정보를 한눈에

세계법제정보센터

World Laws Information Center



5 / 6 || < >

약속문 읽어보기 : 법령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likms.assembly.go.kr/bill)

국회에서 검토중인 법률안의 논의과정, 진행상황을 확인하는 곳

**의안정보시스템**
BILL INFORMATION

HOME | 입법정보 통합검색

의안개요

의안검색

의안현황

의안통계

연차보고서

청원

열린정보와 함께하는
국회의안정보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의안검색

제안대수

제21대 (2020-2024)

제21대 (2020-2024)

의안종류/처리

의안종류전체

의안처리구분전체

발의자/제안자

제안종류전체

발의종류전체

동명이인 참고

의안번호

의안명

검색

상세검색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검색

인기검색어

1

코로나

2

공직선거법

↑ 2

3

성범죄

↓ 1

4

중소기업

↓ 1

5

성폭력

↑ 3

6

방송법

↑ 4

7

공매도

↑ 5

8

소상공인

↓ 3

9

손실보상

↑ 11

10

이동복지법

NEW



본회의 처리의안



본회의 표결정보



국회입법예고



의사일정



입법정보 통합검색



위원회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

+ 리스트 더보기



최근 접수의원

+ 리스트 더보기



본회의부의안건

+ 리스트 더보기

제384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107801

의결결과

원안가결

2021-02-01

의안원문

국무총리 ·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

2107771

의결결과

원안가결

2021-02-01

의안원문

국무총리 ·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

2107770

의결결과

원안가결

2021-02-01

의안원문

약속문 읽어보기 : 법령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elis.go.kr)

지방의회에서 검토중인 자치법규를 확인할 수 있는 곳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자치법규검색입법예고최근제개정자치법규

지도

지도를 클릭하면 해당 자치단체 자치법규 목록으로 이동합니다.

강원도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대전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경상남도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원클릭으로 열리는 자치법규세상

검색

주민참여조례서명하기

최근제개정

- 부산광역시동래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 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보조금 지원표기에 관 ...
- 부산광역시동래구 통·반 설치 조례
- 부산광역시동래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

입법예고

- 대구광역시 재단법인 오페라하우스 설립 ...
-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
-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규칙 일 ...
-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 ...

 행정안전부

시스템 안내 | 자주묻는질문 | 실무담당자를위한 자치법규 Q&A

관련기관 홈페이지(바로가기)

이동 >

(우)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411(어진동) / 전화번호안내

약속문 읽어보기 :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ex : 지방자치법 검색해보기]

현재 18년 12월 개정한 지방자치법이 시행 중이며, 21년 1월 전부개정안이 나와 22년 시행을 앞두고 있음

재개정이유, 연혁, 신구법비교, 법령체계도, 법령비교 등을 활용

화면 + -

오류문의 개선의견

신뢰할 수 있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자치법

로그인 회원가입 En

Q 검색

법령
(법률 · 대통령령 · 부령)

자치법규

행정규칙

판례 · 해석례등

별표 · 서식

학칙 · 규정

그밖의 정보

☒ 현행법령 ☐ 연혁법령 ☐ 근대법령 ☐ 외국어번역 ☐ 최신법령 ☐ 조약

상세검색 분류검색

조회이력 새창(목록) 표준국어대사전

법령명

법령분문

조문내용

조문제목

부칙

제정·개정문

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12. 22.] [법률 제17662호, 2020. 12. 22. 제정]

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11. 24.] [대통령령 제31170호, 2020. 11. 24. 제정]

3. 예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2. 22. 제정]

4. 지방자치법
[시행 2019. 12. 25.] [법률 제16057호, 2018. 12. 24. 제정]

田 본문

田 부칙

5. 지방자치법 시행령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0. 12. 22. 제정]

6.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조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0. 12. 22. 제정]

본문

제정·개정이유

연혁

3판비교

신구법비교

법령체계도

법령비교

생활법령정보

조례위임조문

위임조례

조문선택

법령주소복사

화면내검색

漢

漢

판

판례

연

연혁

행

위임행정규칙

규

규제

지방자치법

[시행 2019. 12. 25.] [법률 제16057호, 2018. 12. 24., 타법개정]

행정안전부(자치분권제도과-지방자치법 총괄), 044-205-3307
행정안전부(선거의회과-지방의회, 제30~92조), 044-205-3373

제1장 총강(總綱)

제1절 총칙

☐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있게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약속문 읽어보기 :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ex : 지방자치법 검색해보기]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의 특례 : 다양한 형태의 지자체 및 의회

제19조 조례의 제정과 개정, 폐지 청구 : 조례 제개정, 폐지 요청이 가능해짐

제20조 규칙의 제정과 개정, 폐지 의견 제출 : 의견제출권 신설

제21조 주민의 감사 청구 : 감사청구 요건이 낮아짐

제26조 주민에 대한 정보공개 : 의회 정보공개 강화

제41조 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 지방의회 강화

제103조 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 : 지방의회 강화

[ex : 정치자금법 검색해보기]

제6조 후원회지정권자

제12조 후원회의 모금, 기부 한도

약속문 읽어보기 : 법령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likms.assembly.go.kr/bill)

[ex : 청년기본법 검색해보기]

2월 2일 기준 8개의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있음
발의안 1개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안 개정사항 확인해보기

'청년기본법'(으)로 총8건이 검색되었습니다.

• 의안명

🔍

청년기본법

검 색

☐ 결과내 재검색

계 계류의안

차 처리의안

• 페이지당 결과수

10

▼

의안번호	의안명	제안자구분	제안일자	의결일자	의결결과	주요내용	심사진행상태
2107449	계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등12인)	의원	2021-01-18				소관위접수
2106720	계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의원 등 10인)	의원	2020-12-18				소관위접수
2106504	계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의원 등 11인)	의원	2020-12-16				소관위접수
2105830	계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의원등14인)	의원	2020-11-27				소관위접수
2105200	계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 등 14인)	의원	2020-11-11				소관위접수
2104874	계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0인)	의원	2020-11-03				소관위접수
2102704	계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의원 등 13인)	의원	2020-08-05				소관위심사
2101419	계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의원 등 15인)	의원	2020-07-03				소관위심사

약속문 읽어보기 : 법령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elis.go.kr)

[ex : 광주시 최근개정된 법규 살펴보기]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자치법규검색입법예고최근제개정자치법규

광주

본청

이동하기

해당지역 자치법규 목록

법규명

검색

전체목차

일괄개정

조항별보기

별지연혁신구조문유사법규조항별보기큰창보기2단비교인쇄저장

제1편 의회

제2편 대변인

제3편 혁신소통기획관

제4편 인사정책관

제5편 청년정책관

제5편 기획조정실

제6편 시민안전실

제7편 자치행정국

제8편 민주인권평화국

제9편 복지건강국

제10편 여성가족국

원쪽 목차에서 자치법규를 검색해주세요

최근개정 된 법규 보기

706

573

조례

145

277

규칙

118

207

훈령

41

88

예규

0

0

기타

감사합니다.

엄창환(오동)

P 010-3579-9527

M kid00761@gmail.com

f kid0076

 eomodong